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신희순)

가. 제안이유

-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(안 제4조)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10조)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청렴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“공직자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 및 우리 구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의 임직원, 구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”으로 정의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 구청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, 안 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에서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및 부패·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명시함.
- 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(사업시행 등)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안 제8조(예산 지원)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9조(청렴교육 및 홍보)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, 구민에 대해서는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.

○ 검토 결과

-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하였는데, 산정방식은 ‘청렴체감도’ 60%와 ‘청렴노력도’를 40% 비중으로 하여 합산하고 ‘부패실태’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 점수(100점 만점)를 산정함.
- 새로운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‘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’를 올해 초

발표하였는데,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(46개), 광역자치단체(17개), 기초자치단체(226개), 교육청(17개)등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(195개)등 총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.2점으로,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.7점으로 가장 높았고, 기초자치단체가 76.6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한편, 해당 결과에서 시책효과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이 평가하는 ‘내부체감도’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의미하는 ‘청렴노력도’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,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.
- 본 안건은 영등포구 및 산하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우리 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3조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 의무를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, 본 조례를 통해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청렴도 향상 기본대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, 제10조)
- 마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바. 청렴 포상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8. 31.~ 9. 20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
나.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등의 임직원

다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

2. “투자·출자·출연기관 등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에서 출자·출연한 단체·기관을 말한다.

3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·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

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
4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5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시행 등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 사업
2.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
3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·설문조사
4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)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되어야 한다.

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
2.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·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